

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전용차로(버스, 자전거)위반 과태료 징수결의('19년 01월)

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1조 제3호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하고자 합니다.

가. 결의내역

- 위반일시 : '18. 7. 2 ~ '18.11.30(18. 11월)
법원 재부과, 렌터카 변경부과분, 사전통지 공시송달분 : '16.10.20.~'18.9.30.
- 부 과 건 : 4,202건 (승용차 4,140건, 승합차 60건, 이륜차 2건)
※ 사회적약자 감면: 4건
※ 법원재판 재부과: 13건
- 부과금액 : 210,580,000원
(승용차 206,900,000원, 승합차 3,600,000원, 이륜차 80,000)
- 납부기간 : '19. 01. 10~'19. 02. 28

나. 예산과목 : 교통사업특별회계, 세외수입, 임시적세외수입, 기타수입, 과태료

서울특별시

붙임: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시분 ('19. 1월)내역 1부. 끝.

주무관	노미선	전용차로과장팀장	김숙자	교통지도과장	01/10 오종범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교통지도과-692 () 접수 ()
 우 /
 전화 2133-4569 /전송 2133-4904 / 부분공개(6)